

제 884 호
1982. 1.15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
편집 : 공 보 관 이 용 우
전화 725-7834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전화 725-6090

시 보

차 례

제 1592 호 :	서울특별시군장성급소유자동차의과세면제에관한특별조 례증개정조례	3
제 1593 호 :	서울특별시원호대상자의주택및농지취득에대한시세과세 면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	3
제 1594 호 :	서울특별시상이용사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과세면제에 관한조례증개정조례	4
제 1595 호 :	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 한조례증개정조례	4
제 1596 호 :	서울특별시서민주택등에대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 ...	4
제 1597 호 :	서울특별시가스사업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증 개정조례	5
제 1598 호 :	서울특별시수도권내공단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증개정조례	5

<이년계속>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서울특별시

2298

제 1599 호 :	서울특별시골프연습장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	6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◎	시		
제 12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변경허가	6	
제 13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변경 (기간연장) 시행허가	7	
제 14 호 :	도시계획사업 (시장, 수산물공판장주차장) 시행허가변경	7	
제 15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	8	
제 16 호 :	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부변경인가고시	9	
제 17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	10	
제 18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변경	10	
제 19 호 :	도시계획시설 (공용의청사, 수도) 변경결정및지적승인	12	

◎	공	고	
제 12 호 :	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지정취소	12	
제 13 호 :	양동구역제 6 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위한 공람공고	13	
제 14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 공람공고	13	
제 15 호 :	재개발사업시행인가변경을위한공람공고	14	
제 16 호 :	KS 표시정지처분공고	15	
제 17 호 :	KS 표시정지처분공고	15	
제 19 호 :	정정공고	16	
제 22 호 :	신탁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청산금납일고지서공시상달	17	
제 23 호 :	환지처분공고	17	
제 26 호 :	도시계획사업토지보상실시계획공람공고	18	
제 3 호 (동대문구) :	공인계각공고	20	

◎	기	타		
	시에	관련된	주요법령개정사항	21

◎ 사 령

◎ 공무원 사망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
시 군장성급 소유자 사의 과세면제
에 관한 특별조례중 개정조례를 이
에 공포한다.

1982년 1월 15일
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인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592 호

서울특별시군장성급소유자동차의
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
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군장성급 소유자동차의
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중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

부칙 제 2항중 "1981년"을
"1982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82년 1월 1일부터
적용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
시 원호대상자의 주택 및 농지취득
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

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2년 1월 15일
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인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593 호

서울특별시 원호대상자의 주택 및
농지취득에 대한 시세과세
면제에 관한 조례중
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원호대상자의 주택 및
농지취득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
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부칙 제 2항중 "1981년"을
"1982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82년 1월 1일부터
적용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
시 상이용사 소유토지, 건물 및 자동
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
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2년 1월 15일
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인

◎ 서울특별시 조례 제 1594 호

서울특별시 상이용사소유토지건물
및 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
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상이용사 소유토지 건
물 및 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
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 조 및 제 2 조 제 1 항중 "취주
장애"를 "신체장애"로 한다.

제 3 조중 "전조"를 "제 2 호"로
한다.

제 4 조 제 1 항중 "전조"를 "제 2 조"
로 한다.

부칙 제 2 항중 "1981년"을
"1982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82년 1월 1일부터
적용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
시 재개발구역내 건축물에 대한 시
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
를 이에 공포한다.

1982년 1월 15일

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인

◎ 서울특별시 조례 제 1595 호

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내 건축물에
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
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내 건축물에
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칙 제 2 항중 "1981년"을
"1982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82년 1월 1일부터
적용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
시 서민주택등에 대한 시세감면조례
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2년 1월 15일

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인

◎ 서울특별시 조례 제 1596 호

서울특별시 서민주택등에 대한
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서민주택등에 대한 시
세감면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
다.

제 4 조 본문에 단서문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부칙 제 2 항중 "1981년"을 "1982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가스사업체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 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2년 1월 15일

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인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597 호

서울특별시 가스사업체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 중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가스사업체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칙 제 2 항중 "1981년"을 "1982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수도권내 공단에 대한 시세불균일 과세 조제에 관한 조제중 개정 조제를 이에 공포한다.

1981년 1월 15일

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인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598 호

서울특별시 수도권내공단에 대한 시세불균일화세에 관한 조제중 개정조제

서울특별시 수도권내 공단에 대한 시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칙 제 2 항중 "1981년"을 "1982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골프연습장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제중 개정조제를 이

에 공포한다.

1982년 1월 15일
서울특별시장 박영수 團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599 호

서울특별시골프연습장에 대한
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
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골프연습장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2조 (불균일과세대상) 제 1조의 규정에 의한 불균일과세대상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 78조의 4 제 1항 제 7호에 해당하는 골프연습장용 토지로 한다.

부칙 제 2항중 "1981년"을 "1982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

◎ 서울특별시고시 제 12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
변경허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378 호

(77.10.27)로 도시계획사업 (대학교) 시행허가된 돈암동 173-1외 29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호 (79.12.10)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 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1982. 1. 9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: 성북구 돈암동 173외 29필

나. 사업의종류 및 명칭:

- 1) 당초: 도시계획사업 (대학교) 시행
- 2) 변경: 도시계획사업 (초, 중학교) 시행 변경

다. 사업의 면적 및 규모

- 1) 당초면적 및 규모: 69,796㎡ (21,113평)
- 2) 변경면적 및 규모:
면적: 69,796㎡ (21,113평)
규모: A, BLOCK (국민학교) 2,617㎡ (지하1층, 지상2층)
B, BLOCK (중학교) 5,224.75㎡ (지하1층, 지상4층)

라. 사업의시행자 주소성명: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173-1 학교법인 성신학원 이사장 이숙중

마. 공사기간

- 당초, 착공및준공: 81.7.8~82.6.30
- 변경, 착공및준공: 81.7.8~83.12.30

바. 위치및계획평면도: 별첨 (도면생략)

※ 도면은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에 보관함.

○ 서울특별시고시제 13 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) 변경
(기간연장) 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72(81.3.16) 호로 도시계획사업(학교) 변경시행 허가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, 동법시행령 제 25 조 및 건설부 고시제 521(81.12.31) 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(학교) 변경(기간연장) 시행하고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한다.

1982.1.13.

서울특별시장

- 가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산 4의 2 호외 19필
- 나.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사업(학교) 및 명칭 : 경문고등학교
- 다. 사업의 규모 및 면적 : 35,213 ㎡
- 라. 사업시행자 주소, 성명 :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산 4의 2 호 학교법인 서울효암학원 이사장 고경무
- 마. 시행기간 (준공예정일)

당초 : 1981.12.31

변경 : 1982.12.31

○ 서울특별시고시제 14 호

도시계획사업(시장:수산물공판장 주차장) 시행허가 변경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359 호(76.12.30) 로 도시계획사업(시장:수산물공판장) 시행허가 및 서울특별시 고시제 418 호(79.9.7) 로 도시계획시설(수산물공판장)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된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의 공람공고(공고 제 395 호(81.12.29) 를 거쳐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제 521 호(81.12.31)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 변경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산업경제국 상공과와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2.1.14

서울특별시장

- 가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1-1
- 나.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사업(시장) 명칭 : 수산물 판장 주차장 시설

다. 사업변경 시행규모									
구분	당 초			변경 (추가분)			변 경 후		
	기 번	면적(평)	용 도	지 번	면적(평)	용 도	지 번	면적(평)	용 도
도시계획사업 지적 고시	용두동 11-1	794.36	수산물 공판장	용두동 11-3 4	413.4	수산물 공판장	용두동 11-1 3 4	1,207.76	수산물 공판장
도시계획사업 시행	수산물공판장 기선치 · 토지 : 794.36 평 · 건축부분 (연면적) 1960 평			위 추가고시된 413.4 평을 수산물공판장의 주 차장시설로 금회허가			수산물공판장 · 토지 : 1207.76 평중 413.4 평은 주차장 · 건물 (연면적) 1960평		

라. 사업시행자의 주소, 성명
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
회장 이동용

마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

1) 착수년월일 : 허가일로부터 15
일이내

2) 준공예정년월일 : 1982.3.31

바. 위치도 및 계획도 : 별첨 (도면생략)
사. 사용할 토지 : 서울특별시 동대
문구 용두동 11-1
(구 11-3, 4)

지목 - 대지

아. 토지소유자 :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
(수용할 토지없음)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15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 허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343 호 (76.12.

20) 로 도시계획시설 (학교) 결정
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 (학교)
용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조
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 (79.12.
10) 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(학교)
시행을 허가하고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용산구청 도시정비과
및 보성여자중고등학교 사무과에
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2. 1. .

서울특별시 장

가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 용산구
용산 2가동 1-1123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1) 종류 : 도시계획사업 (학교증축)

2) 명칭 : 보성여자중 · 고등학교

다. 사업의 규모 및 면적 1) 대지면적 : 9,561.6 ㎡ 2) 건축면적 (증축) : 2,278.459 ㎡ (본관 1,678.86 ㎡ 강당 222.9 ㎡) (별초 176.699 ㎡)					1) 착공예정일 : 1982.4.1 2) 준공예정일 : 1983.3.31		
라.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) 주소 : 서울용산용산2가동 1-1123 2) 성명 : 학교법인 보성학원					바.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, 지적 소유자의 권리명세 : 별첨 사.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: 별첨		
○ 도시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구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, 성명							
명 칭	소재지	지 번	지 목	지 적	소 유 자		이해관계인
					주 소	성 명	
학교 법인 보성학원 (보성여자 중·고등학교)	서울시 용산 2가동	1-1123	대지	9,561.6	용산 2가동 1-1123	학교법인 보성학원 이사장 한경직	없 음
○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 소유자 이외의 권리명세							
명 칭	소재지	지 번	지 목	지 적	소유자 이외의 권리명세		
학교 법인 보성학원 (보성여자 중·고등학교)	서울시 용산 2가동	1-1123	대지	9,561.6	없 음		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16 호 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 일부 변경인가 고시 1. 주택개발을 위한 재개발 사업관					리처분 계획인가되 아현 1구역내 일부 토지 (39구획) 에 대하여 2. 도시재개발법 제 41 조 및 제 55 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하고 그 내용을 공고일로부터 30 일간 토지 이해관계인 및 소유자에		

계 공람에 공한바, 하등의 이의 사항이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인가 고시한다.

- 가. 명 칭 : 재개발사업관리처분 계획 일부 변경
- 나. 변경구역 : 아현1구역 39 구역 (마포구 아현동 378-18 일대)
- 다. 면 적 : 1,319.1 평

1982.1.14

서울특별시장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7 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13 호 (74.8.12)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학교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전설부고시 제 521 호 (81.12.31)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시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각각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.

1982.1.15

서울특별시장

- (1) 사업시행지 : 시대문구 대현동 11-1 일대
- (2)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사업(학교)

이화여자대학교)

명칭 : 경영연구원 건립

- (3) 시행부지면적 : 2,124평방미터 (642.51 평)

규모 :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1층 지하 1층, 지상 2층

- 면적 : 1,539.72 평방미터 (465.76 평)

- (4) 시행자의 성명 :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 김영의

주소 : 시대문구대현동 11-1

- (5) 사업의 착수에정일 : 허가일로부터 30일 이
준공예정일 : 82.12.31

- (6)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, 건물,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소유권이 외의 권리명세 : 지목 (학교용지) 소유권이 외의 권리명세 (없음)

- (7) 토지소유자 : 학교법인 이화학당

- (8)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, 성명 : 없음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8 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변경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46 호 (74.4.18) 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결정 및 지적승인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고시제 330 호 (81.9.10) 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전설부고시 제 521 호 (81.12.30)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 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<p>2. 판제 보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성북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>1982.1.15</p> <p>서울특별시장</p> <p>가. 사업시행지 : 성북구 안암동 5가 126-16 일대</p> <p>나.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사업 (학교 :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)</p> <p>명칭 : 고려대학교 시설확충</p> <p>다. 사업시행면적 : 369,435. 평방미터</p> <p>라. 건축계획 (변경)</p> <p>건축면적 : 5,461.45 평방미터 (11동)</p> <p>연면적 : 13,605.24</p> <p>○식당 - 건 : 498.18 평방미터</p> <p>연 : 1,846.9</p> <p>(지하 1층, 지상 3층,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: 1층증)</p> <p>○과학도서관</p> <p>건 : 2,934.71 평방미터</p> <p>연 : 8,503.10</p> <p>(지하 1층, 지상 2층,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: 신축)</p> <p>○실험실 - 건 : 165 평방미터</p> <p>연 : 165</p> <p>(지상 1층, 불력조 : 신축)</p> <p>○전자계산소 - 건 : 487.04 평방미터</p> <p>연 : 1,713.72</p>	<p>(지하 1층, 지상 3층 : 위 1만 변경)</p> <p>○이공대후문 수위실 -</p> <p>건 : 17.16 평방미터</p> <p>연 : 17.16</p> <p>(지상 1층,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: 신축)</p> <p>○창고 -</p> <p>건 : 967.68 평방미터</p> <p>연 : 967.68</p> <p>(지상 1층, 경량철근 : 신축)</p> <p>○옥외변전실 -</p> <p>건 : 391.68 평방미터</p> <p>연 : 391.68</p> <p>(지상 1층,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: 신축)</p> <p>마. 사업시행자성명 :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 이사장 이활</p> <p>주소 : 성북구안암동 5가 1번지</p> <p>바. 사업의 착수에 정일 : 1983.1.15 일로부터 15일 이내</p> <p>준공예정일 : '83.1.30</p> <p>사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, 건물과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소유권의 외의 권리명세 : 지 (학교용지)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(없음)</p> <p>아. 토지소유자 :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</p> <p>자. 토지수용법 제 4 조제 1항의 관계인 주소, 성명 : 없음</p> <p>*별첨도면참조 (도면번호)</p>
---	---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19 호

도시계획시설 (공용의청사,수도)
변경결정및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 (공용의청사,수도)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제 13 조와 건설부고시제 521 호 (81.12.31)와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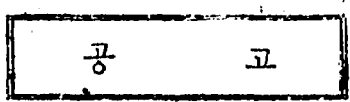
2. 관계 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시설제획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2.1.19
서울특별시장

○시설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비고
기정	공용의청사	강남구서초동산 185 부근	54,877	
변경	"	"	61,489	증 6,612 ㎡
기정	수도	도봉구미아동산 1 의 17 일대	16,860	
변경	"	"	13,025	감 3,835 ㎡

*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12 호

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안지정취소

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30 조 규정에

의거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동법시행 규칙 제 28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82.1.
서울특별시장

다 음

지정번호	업체명	소재지	대표자	취소사유
용산 - 4	삼아기공사	이태원 131-24	김규남	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30 조제 2 항위반
" - 11	대한엔지니어링	한강 1가 257-1	김창동	"
" - 23	청원	갈월동 8-71	김태현	"
" - 29	합동설비	동자동 43-30	김동인	"
" - 49	성일설비(주)	한강 3가 40-199	조동진	"
계 5 개소				

◎ 서울특별시 공고 제 13 호

양동구역 제 6 지구 재개발사업 시행
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

1. 건설부고사 제 285 호 (78.9.26)로
구역지정되고, 서울시고시제 380
호 (81.10.21)로 사업계획변경결정
된 양동구역 제 6 지구에 대하여 동
지구내 토지소유자인 주식회사 대
우 (대표이사 김우중)로부터 도시
재개발법제 12 조 규정에 의한 재
개발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동
법제 15 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
이 공람공고한다.

1982.1.11.

서울특별시 장

공 랑 개 요

- 1) 사업명칭 : 양동구역 제 6 지구 재개발사업
- 2) 시행위치 : 중구남대문로 5가 525, 526, 527, 378, 618 (5필지)
- 3) 시행면적 : 3,835.8㎡ (1,167.3평)
 - 대지면적 : 3,081.4㎡ (932.1평)
 - 공공용지시설면적 : 754.4㎡
- 4) 건축계획 (규모 및 층별용도는 건축허가로 확정한다)
 - 건축면적 : 약 1,230㎡ (건폐율: 40%)
 - 연 면 적 : 약 27,200㎡ (용적율: 640%)

○ 용도 : 업무시설, 판매시설

○ 층수 : 지상 18층, 지하 2층

5) 시행예정자

중구남대문로 5가 525

주식회사 대우 (대표이사 김우중)

6) 규약 및 사업시행계획서 : 별첨 (생략)

7) 시행기간 : 82.2.1 - 83.12.31

8) 공람기간 : 82.1.11 - 82.2.9

9)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(720-2714)

중구남대문로 5가 525

(주) 대우 (771-9211)

◎ 서울특별시 공고 제 14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공람공고

1. 서울시고시제 22 호 (81.1.30) 로
시설 결정된 서대문구 홍은동
13-38 외 3필지에 대한 도시계획
사업 (학교) 시행을 허가하고자, 도
시계획법 제 25 조의 2 제 1항 규
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
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주택과에 비
치하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기타
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2.1.13.

서울특별시 장

<p>가. 사업시행지 : 서대문구홍은동 13-38 외 3필지</p> <p>나. 사업의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 업 (학교) 시행 대종고등공민학교운동장정지</p> <p>다. 사업의규모 : 운동장정지 3,493㎡</p> <p>라. 시건설행자주소 및 성명 : 서대문 구홍제동 92-1 재단법인대종교유지재단 대표이사</p>	<p>박순천</p> <p>마. 사업예정기간 : 82.2.1-82.2.27</p> <p>바. 공람기간 : 82.1-82.1</p> <p>사. 공람장소 :</p> <p>(1) 서대문구청주택과 (324-7913)</p> <p>(2) 서대문구홍제동 92-1 재단법인 대종교 유지재단</p> <p>아.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번, 지 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</p>
---	--

구 분	지 번	지 목	소유자	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	비 고
사용할	서대문구홍은동산 1-503	임	서울시		
토 지	" 홍은동 13-38	대	"		
	" " 13-80	"	"		
	" " 13-79	"	"		

<p>◎ 서울특별시 공고 제 15 호</p> <p>재개발사업시행인가변경을 위한공람공고</p> <p>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218 호 (81. 6.13) 에 의거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를 득하여 시행중인 서소문구역 제 3 지구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도</p>	<p>시재개발법 제 12 조 2 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한다.</p> <p>2.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 할것이나 미수령자 및 개별통지 누락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서 갈음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2. 1. 13. 서울특별시 장</p>
---	--

가. 변경내용

1) 건축계획 (규모 및 층별용도는 건축허가로 확정함)

구	분	단	조	변	경		
대	지	면	적	8,856.3	㎡	8,856.3	㎡
건	축	면	적	3,399.48	㎡	3,000	㎡
연	면	적	85,625.3	㎡	81,500	㎡	
건	배	발	38.45	%	34	%	
용	적	발	663.8	㎡	550	㎡	
층		수	지상 17층, 지하 4층		지상 24층, 지하 5층		
용		도	업무시설		업무 및 판매시설		
시	행	자	동방생명보험 (주) 외 37명		동방생명보험 (주)		

나. 변경사유 : 고도기준조정에 따른 건축계획변경

다. 공람기간 : 82.1.13 - 82.2.11 (30일간)

라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재개발과 (720-4627)

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(771-33 교환 3102)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16 호

K·S 표시정지처분공고

공업표준화법 제 21 조 규정에 의거
다음과 같이 K·S 표시정지처분하였기
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따라
이물 금고한다.

1982. 1. 13

서울특별시장

허가번호 : 제 2338 호

허가일자 : 81.3.18

제조업체 : 합성도어칼로우저

소재지 : 서울영등포구신길동 209-1

대표자 : 김 학 주

계 품 : 도어칼로우저 (KSF 4505

종류등급 : 표준형 (3 호)

처분기간 : 공고일로부터 3 개월

처분사유 : K·S 규격 미달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17 호

K·S 표시정지처분공고

공업표준화법 제 21 조 규정에 의거

아래와 같이 KS (한국공업 규격) 표시 정지처분 하였고 동법시행규칙 제 21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.

1982. 1.13

서울특별시장

허가번호: 제 423 호
 허가일자: 79. 9.29
 제조업체: 삼화콘덴서 공업 주식회사
 대표자: 정 태 수
 소재지: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
 656-3
 규격번호: KSC 4801
 품 명: 저압 진상 콘덴서
 종류, 등급: 380V 3상 SHE형
 액체 15UF

처분기간: 공고일로부터 3개월
 처분사유: K.S 규격미달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19 호

정 정 공 고

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 28조의 규정에 의거 제 881 호 (81.12.30)에 공고한 서울특별시공고 제 400 호의 내용중 22 ~ 18 페이지 2행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한다.

1982. 1.

서울특별시장

구분	지정번호	상호	대표자	소재지	취소사유	조치	관계법규	정정사유
당초	동대문 제 49 호	한독설비	김용구	전농동 597-26	무단 폐업	지정 취소	에너지이 용합리화 법 제 30 조 1 항	
정정후	"	"	"	" 597-23	"	"	"	지 번 오 기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22 호

신림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청산
금납입고지서공시송달

81.11. 1자로 납입고지란 신림토
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청산금 납입
고지서를 납부 의무자에게 송달한 바
있으나 수령인의 주소 또는 거소
불명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(반송)
지방세법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하여
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한다.

- 1. 공시송달 대상: 신림지구 (남현동
이성골 외 315 건)
- 2. 공시내용: 청산금 납입고지서
81.11 월분
가. 납부장소: 당시 도시계획국 구
획정리과
나. 납부기간: 81.11.1~82. 4.30
- 3. 공시대상자 경단 (신민과 비치)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23 호

환지처분공고

1. 당시가 1968.1.8, 69.11.28
71.8.24자로 건설부장관으로 부터
인가를 얻어 사업시행한 영동1.2
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 토지
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어 다음
과 같이 환지처분하였기 토지구획

정리사업법 제 61 조에 의하여 공고
한다.

2. 관세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
국 구획정리과, 강남구청 시민봉사
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
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기 하며,
서류송달은 토지소유자에게 별도
공보될 것이나 이수령되는 토지소
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공고로
갈음한다.

1982. 1. 18

서울특별시장

다 음

가. 사업명: 영동 1,2 토지구획정
리사업
나. 환지처분 대상위치: 강남구 압
구정동, 신사, 논현, 학동, 청담,
삼성, 도곡, 역삼, 대치, 반포,
석초, 잠원일부

다. 환지처분면적: 896 만평중
359 만평

라. 관세도서의 열람

1) 환지처분 내용: 지면, 지목,
지적, 증감에 대한 관감도면
은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
리과 및 강남구청 시민봉사
실

2) 청산금: 당시 도시계획국
구획정리과

마. 공부정리 : 지금까지 사용하여온 공부상의 지번, 지목, 지적은 환지 처분내용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므로 동변경된 사항을 당사에서 공부부를 정리할 것이나 징수 청산금 납부 대상토지는 청산금 납부 즉시 정리되며 채비지 소유자는 당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에서 이 전등기절차를 취하시기 바라며, (구비서류 : 매도종서 및 위임장 교부신청서 (소정양식), 채비지계약서 및 명의변경승인서, 확정된 토지대장등본 또는 환지확정증명 1부,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 2부, 만약 공부상 소유주 주소, 상이시는 주민등록등본 1부)

바. 청산금의 징수교부 :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대상의 토지에 결정된 청산금은 공부의 결람후에 별도로 통지할 것이나 징수청산금은 납입 고지 이전이라도 납부할 수 있다.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26 호

도시계획사업토지보상실시
계획공람공고

1. 건설부고시 제 25 호 (72.11.10) 로 지적고시된 구로구 개봉동 92번지 51호부터 고척동 189번지 1호 남부순환도로-강서로구간

내의 저축 편입되는 사유토지의 보상계획을 수립코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2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일 반의 공람에 공하고자 공고함.
2.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건설관리과 에 비치하고 공람하고 있으며 토 지 소유자에게는 별도 통보할 것이 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 로 갈음함.

1982. 1. 19
서울특별시

공 람 개 요

1. 사업의 위치 : 구로구 개봉동 92의 51-고척동 160의 18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남부순환 도로-강서로간 토지보상
3. 사업의 규모 : B = 20 m
L = 830 m
토지 5,025 평중 금회보상 약 2,980 평 (예산범위내)
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 (구로구 청장)
5. 보상방법 및 절차 :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준함.
6. 보상시기 : 도시계획사업 보상실시 계획 인가 공고일로부터 1982. 9. 30 까지
7. 토지 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 4조 3항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, 성명 : 별첨 토지조서
첨 부 : 토지조서 이부.

토 지 조 서							
일련 번호	소재지지번	지목	지적	원입 년적	실제이용 상 황	관 계 인	
						성 명	주 소
1	개봉동 92-77	대	25	25	대	이광수의3인	개봉동 69-32
2	" 92-5	"	7	7	"	이 덕 준	" 92-2
3	" 92-70	"	21	21	"	이 영 우	" 92-8
4	" 92-71	도로	27	27	"	조 효 연	" 124-10
5	" 92-72	대	39	39	"	이 학 남	연지동 37
6	" 92-73	"	3	3	"	강 태 동	개봉동 126-20
7	" 92-74	"	5	5	"	조 병 우	" 92-35
8	" 92-51	전	1,876	1,876	도 로	이 승 훈	오류동 137-21
9	" 123-5	밭	7	7	"	이 승 철	고척동 263
10	" 126-8	대	7	7	"	안 윤 수	누번동 80-1
11	" 123-4	답	20	20	"	안 병 은	
12	" 126-10	도로	2,545	2,545	"	이 종 필	고척동 263
						안 윤 수	누번동 80-1
						안 병 은	
13	" 125-4	전	208	208	"	신 철 호	한남동 737-7
14	" 127-27	대	24	24	대	조 방 훈	개봉동 127-1
15	고척동 253-16	전	641	641	도 로	공 혜 주	충정로 2가 98-1
16	" 253-320	"	76	76	"	어 광 본	고척동 253-15
17	" 253-360	대	214	214	"	강 초 영	노고산동 107-4
18	" 253-182	전	655	655	"	강 창 원	고척동 267
19	" 253-184	대	20	20	"	신 근 성	남가좌동 296-4
20	" 253-139	전	324	324	대	이 덕 준	개봉동 69-2
21	" 253-361	대	3	3	"	강 문 중	" 68-83
22	" 253-362	"	10	10	"	박 삼 랑	고척동 253-217
23	" 253-1	답	598	598	도 로	양 용 석	" 263
24	" 259-3	"	830	830	"	강 창 원	" 267
25	" 260-9	"	129	129	대	"	"
26	" 260-39	대	192	192	"	강 태 희	" 260-3

일련 번호	소재지번호	지목	지적	면적	면적	실제이용 상황	소유자	
							성명	주소
27	고척동 264-26	대	51	51	대	윤병옥	고척동 264-11	
28	" 265-5	"	793	793	"	이종필	" 263	
29	" 264-27	"	7	7	"	김용석	" 267	
30	" 264-28	"	9	9	"	"	" "	
31	" 268-22	"	218	218	"	강창원	" "	
32	" 266	"	153	153	"	"	" 260-19	
33	" 267-21	"	42	42	"	한만은	" 267	
34	" 267-22	"	27	27	"	양용석	" 263	
35	" 산 22-6	임야	2,224	2,224	임야	문명기외 7인	신정동 188	
36	" 산 22-4	"	886	886	"	서울시법회	무교동 119	
37	" 164-88	대	259	259	도로	진태섭	고척동 76-159	
38	" 164-35	"	3,137	3,137	"	이태영	심곡동 747	
39	" 165-19	전	106	106	"	고귀손	고척동 168	
40	" 161-5	담	122	122	"	양한석	" 262	
41	" 160-18	도로	69	69	"	김현수	" 168	

◎ 동대문구 공고제 3 호

공인 개작 공고

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6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장직인 및 계인을 개작하였기 동조례 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.

1982. 1. 9.

동대문구청장

1. 공인명 : 상봉제 1동장의 직인 및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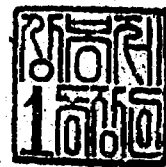
계인

2. 사용개시 및 계인일자 : 82. 1. 15

3. 공인인영

인

영



공인명

상봉 제 1동장의 직인 및 계인

기 타

○ 주요 법령 개정 사항

지방세법시행령개정

(82. 1. 1 시행)

<총칙부분>

개 정 사 항	내 용
1. 친족 기타특수관계인범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개법인과 그 종업원의 관세는 사용자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함. (령제 6 조 9 호)
2. 결손처분요건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채납자의 행방과 재산이 관명되지 아니할때. ○ 채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조회하여 확인 ○ 채납된 지방세가 50,000 원미만시 조회 불요 (령제 14 조 ①, ②)
3. 납세에 관한 증명서청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(령제 20 조, 제 22 조)
4. 과오납금환부이자율 50% 인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100 원에 대하여 1 일 2 전 → 1 일 $\frac{3}{10,000}$ (년 7.3% → 년 11.0%) (령제 39 조)
5. 결손처분시 소재 불분명 확인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민등록표, 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 주소, 거소,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함을 확인 (령제 39 조의 3)
6. 감사원에의 심사청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 부를 구청장에게 제출 (령제 46 조 ⑦)

< 각 처 부 분 >	
개 정 사 합	내 용
<p>1. 취득시기간규정보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년부로 취득하는 선박은 취득일전의 동기에 불구하고 년부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 (명제 73 조 ③ 단서) ○ < 여가건축물의 취득일 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준공검사필종교부일 ○ 준공검사전 사실상 사용일 ○ 가사용 승인일 ○ < 무허가건축물의 취득일 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실상의 사용일 (명제 73 조 ④) ○ 차량, 중기, 선박은 제조, 조립, 건조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최초의 승제취득일로 함 (명제 73 조 ⑤) ○ 수입물건을 취득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인취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사용하는 경우는 그 수입물건의 동기, 등록일을 취득일로 간주 (명제 73 조 ⑥ 단서)
<p>2. 년부금의 범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약보증금을 년부구액에 포함하며, 매회 지급하는 금액을 년부금액으로 규정 (명제 73 조 ⑤)
<p>3. 과점주주의 취득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점주주였던 자가 5년 이내에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한하여 종전 과점주주 당시의 지분비율을 공제하고 5년이 경과되어 과점주주로 된 때에는 지분비율전부를 취득으로 보아 과세 (명제 78 조 ③)
<p>4.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대도시의 범위 일부조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 1시, 5군, 12읍, 14면 > ○ 광명시 ○ 양주군 : 주내면, 백석면, 장흥면 ○ 남양주군 : 구리읍, 미금읍, 와부읍, 별내면, 진접면, 진전면

개 정 사 항	내 용
<p>5. 취득세, 등록세, 재산세의 감면제한 업종의 범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광주군 : 광주읍, 동군읍, 초월면, 퇴촌면, 남중면, 서부면 ○ 시흥군 : 군포읍, 의왕읍, 소래읍, 과천면, 수암면, 군자면 ○ 고양군 : 보도읍, 원당읍, 일산읍, 벽제읍, 지도면, <p>(령제 79 조의 6)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p>지방공업개발법 제 6 조에 의하여 입 지지정을 받은 자가 2 년내 취득 하여야 감면되는 사업용 부동산의 업종</p> </div> <p>(령제 79 조의 8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 ○ 석유정제업 (구리스 및 윤활유 제조사업 제외) ○ 천연가스, 석탄가스, 석유가스 (액화 및 정유제 가스포함), 혼합가스, 스팀생산사업과 이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 ○ 제철 및 제강사업 ○ 철강압연사업 ○ 비철금속 제련사업, 비철금속 정련사업 ○ 철강선박을 수리 또는 제작하는 조선업 ○ 철도, 과도용차량의 제조사업 ○ 자동차의 조립 및 제조사업 ○ 내연기관의 제작업 ○ 시멘트제조사업 ○ 총포, 도검, 화염류의 제조사업 ○ 화학비료의 제조사업 ○ 나부타분해공업, 석유화학공업

개 경 사 함	내 용
<p>6. 입지지정을 받은자가 5년 내 공장시설을 개발지구내로 전부이전하는 요건</p> <p>7. 기업부설연구소의 범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열가스성수지의 제조사업 ○ 판유리 제조사업 ○ 비내화용인 건설용점토제품과 시멘트제품 (PC 강선포함분제외) ○ 주류제조사업 ○ 연료탄의 제조사업 ○ 자동차정비사업 ○ 제조사업을 제외한 축산업, 임업, 수산업, 광업, 채석업, 제조업, 전기가스수도사업, 건설업, 도매업, 소매업, 음식숙박업, 운수보관 및 통신업, 금융보험업, 부동산업, 용역업, 서비스업, 부동산임대업 ○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당해개발지구의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업종 ○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당해개발지구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업종중 내무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이 협의하여 지정한 업종 ○ 대도시내의 이전대상 공장시설을 지방공업 개발지구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하기전에 6월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을것. ○ 지방공업개발지구내에서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6월내에 대도시내 당해 공장을 폐쇄할것. (형제 79 조의 9) < 취득세, 등록세, 재산세 > ○ 독립된 연구용시설 및 기자재물 갖추고 자연계분야 학식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30 인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상시근무하는 연구소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인정하는것.

개 정 사 항	내 용
8. 공업유치지역내의 취득기간	(령제 79 조의 10) <취득세, 등록세, 재산세> ○ 시도지사에게 공장설치신고후 2년내 ○ 이전축전지역등에서 공장시설을 전부이전 시는 5년
9. 주택공사감면받을 수 있는 소규모주택	(령제 79 조의 11) <취득세, 등록세, 재산세> ○ 전용면적 85㎡이하 (25.7평)의 공동주택 (부대시설포함) 및 그 부속토지 ○ 토지 취득후 3년내착공조건
10. 대단위 석유비축용시설	(령제 79 조의 12) ○ 158,000㎏이상인 일단의 시설 및 그 부속토지
11. 건물과표결정	(령제 79 조의 13) ○ 매년 2회 → 매년 1회 (령제 80 ①2호)
12. 타인소유공장 임차인의 공장이전증과	○ 타인소유공장을 임차경영한자가 2년내에 공장시설 이전시증과 (령제 84 조의 2 ②2호단서)
13.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과세유예 기준 등 변경	○ 취득일로부터 6월내 → 1년내 매매용토지 6월내 → 3년내사용 정관상목적사업 →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또는 행정청의 허가, 인가받은 사업 (령제 84 조의 3 제 3 호 제 142 조 ①1 호 7 목)
14. 취득세 증가산세제외	○ 2년내 취득신고후개각 ○ 등기, 등록을 요하지 않는 물건 ○ 지목변경, 차량, 증가, 선박의 종류변경 주식 취득 간주취득 (령제 86 조의 2)

개 정 사 항	내 용
15. 등록세 용도구분 비과세 범위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의료법인 (서울, 직할시, 도청소재지 제외) ○ 어촌계 ○ 농협중앙회, 수협중앙회, 축협중앙회가 농어민에게 영농 또는 축산자금융자에 따른 담보불등기 (령제 96조)
16. 대도시내법인중과세제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통산업근대와 촉진법에 의한 유통산업 (소매상의협업화 및 연쇄화사업은 상공부가 지정한 본부 및 지부여 국한) ○ 제외받으려면 취득등기후 1년내 목적사업에 사용할것. (령제 101조)
17. 대도시내신설 전입법인등 등록세중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점, 지점등의 설립, 설치, 전입, 이전 또는 이후 5년내에 취득한 비업무용토지 추가 ○ 주택건설용은 2년내착공 → 3년내착공 (령제 102조)
18. 면허세면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가령치된 도검 ○ 축산협동조합의 고유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면허 (중앙회제외)
19. 면허증서교부시 납세필증 첨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면허증명교부전 면허세를 납부하고 납세필증 또는 영수증 사본을 징수비치후 면허증을 교부토록 의무화 (령제 127조)
20. 법인세할 주민세의 안분 비례방법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기준 → 당해 사업년도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의 과세표준액 (영세율대상포함) 기준 (령제 130조의 5)
21.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의 법인세할주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시부과한 주민세는 사업장 타시도로 이전한 경우라도 수시부과기관에서 징수

개 정 사 항	내 용
<p>22. 공공단체의 범위재조정</p>	<p>(령제 130 조의 6 단서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지대량조합, 동연합회 ○ 근로복지공사 ○ 산림계, 산림조합, 산림조합중앙회 ○ 한국방송공사 ○ 한국은행
<p>23. 재산세현황부과</p>	<p>(령제 134 조 ①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부상지목에 불구하고 현황에 의함 →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에 불구하고 현황에 의함. <p>(령제 139 조)</p>
<p>24. 공한지적용개위대상 변경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처상정착물건적의 7 배이내 →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업 배치법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 <p>(령제 142 조 ① 1 호(6)목)</p>
<p>25. 매매용 및 임대용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간 주요정변경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취득후 3 년이 경과된 토지 <p><매 매 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산세 납기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(또는 재산세 납기개시일 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한 경우는 당해 사업년도)의 1년 간의 임대수입이 토지가액의 10%에 미달하는 토지 <p>(령제 142 조 ① 1 호(7)목)</p>
<p>26.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 시장의 기준변경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장법에 의한 시장 → 시장 <p>* (무허가시장 포함)</p> <p>(령제 199 조의 2 ①)</p>

개 정 사 항	내 용
27. 사업소세비과세 사업자 대상변경	<대상에서 삭제> ○ 병원, 의원, 한의원, 勸善원등 의료업 ● 전기, 수도, 가스의 생산 및 공급업 <비과세대상추가> ○ 농협, 수협, 축협 (중앙회제외), 산림계, 산림조합 및 동중앙회, 농지개량조합 및 동연합회 (령제 209 조)
28. 사업소세 50%경감 및 사업	○ 병원, 의원, 한의원 조산원등 의료업 ○ 전기, 수도, 가스의 생산 및 공급업 ○ 농협, 수협 및 축협중앙회 ○ 중소기업협동조합, 동연합회 및 중앙회 ○ 한국해운조합 ○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 (령제 209 조의 2)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면허세대상개정요지</u></p> 제 1종면허 (27,000 원) ○ 주택건설업 (신설) ○ 석유판매업 (도매업→대리점업) ○ 증권금융업, 증권대체결제, 증개, 명의개서업, 장기신용은행업 종합 금융업 (신설) ○ 유흥음식점영업 (2종에서격상) ○ 무도장 (삭제) ○ 냉동업→식품냉동, 냉장업 (수산냉동제외) ○ 제빵업, 제과업→과자류제조업 (100인이상) ○ 제당업→당류제조업 (100인이상) ○ 흥신업 (삭제)	○ 산업폐기물처리업 (신설) ○ 고압가스공급업 (100원이상) (신설) ○ 도검제조업 (100인이상) (신설) ○ 폐유처리업 (신설) 제 2종면허 (21,600 원) ○ 전문음식점영업 (3종에서 격상) ○ 일반 및 특수유흥음식점 (삭제하여 1종으로 격상) ○ 다방영업 (토지등급 62 등급이상) (신설) ○ 운송점영업→자동차운송알선사업, 철도소운송업 ○ 유흥광구의 광업권설정 (신설) ○ 식품등 수입판매업 (신설)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빵업, 제과업 → 과자류제조업 (50 인이하) ○ 고압가스제조, 저장, 공급, 판매업 (50 인이하) (신설) ○ 노점류제조업 (50 인이상) (신설) ○ 담배수출입업 (신설) <p>제 3 종면허 (16,200 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중음식점, 휴게실영업 (5 종에서 석상) ○ 금은세공업 (삭제) ○ 석유수출입업 (신설) ○ 농수산물중매업 (신설) ○ 제빵, 제과업 → 과자류제조업 (30 인 이상) ○ 식품포장업 (30 인이상) (신설) ○ 특정열사용 기자재의 공급업 (신설) ○ 양광업 (토지등급 55 등이상) (신설) ○ 고압가스기기, 기구의 제조, 수리업 (신설) ○ 금은 세공업 (10 인이상) (신설) ○ 전용자동차정류장 (신설) ○ 고압가스의 제조, 저장, 공급, 판매업 (1 - 2 종 이외의것) (신설) ○ 도점류제조업 (1 - 2 종 이외의것) (신설) ○ 찜삼, 홍삼, 인삼 제품등의 제조, 수출입업 (신설) ○ 정기간행물의 수입판매업 (신설) ○ 특정열사용 기자재의 용접, 구조 검사 (삭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산물의 포장용기 제조, 판매업 (신설) ○ 마약도매, 대마취급업 (신설) ○ 오염물질 측정대행 (신설) <p>제 4 종면허 (10,800 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석유제품판매업 → 석유판매업 (1 - 2 종 이외의것) ○ 식품자동판매기영업 (신설) ○ 병과영업 (삭제) ○ 고급빵류 병과점 (삭제) ○ 용기류제조업 (신설) ○ 식품의포장업 (3 종 이외의것) (신설) ○ 농약원재 및 방제업 (신설) ○ 다방업 (2 - 3 종 이외의것) (신설) ○ 관세사업 (신설) ○ 도점류 수입판매업 (신설) ○ 종제 및 부화업 (신설) ○ 측량업, 건축점사업무대행업 (신설) ○ 공원(도로공원포함) 점용 및 사용 (신설) ○ 농수산물 수집가공업 (신설) ○ 주요농작물종자 판매업 (신설) ○ 항공운송이용사업 (삭제) <p>제 5 종 면허 (7,200 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양시설설치 (신설) ○ 간이음식점, 간이주점 (삭제) ○ 금은세공업 (3 인이상) (3 종에서 격하) ○ 식품포장업 (3 - 4 종 이외의것) (신설)
--	---

- 산업설비수출 (신설)
 - 병과점 (삭제)
 - 외국인전용 판매장 (신설)
 - 인삼제품판매업 (신설)
 - 공해배출시설설치 (신설)
 - 폐기물운반선 (신설)
- 계 5종 면허 (3,600 원)
- 과자류제조업 (1 - 5종이외의것) (신설)
 - 우표류, 수입인지판매 (신설)
 - 사료판매업 (신설)

사 령

◎ 1982년 1월 11일자 명제 6호

문 급 자

지방별정직 8 급상당 (부녀상담원)에
입함.
1호봉을 급함.
등대문구 근무를 명함.

학 명 회

지방별정직 8 급상당 (아동복지지도원)
에 입함.
1호봉을 급함.
아동상담소 근무를 명함.

이 방 관

지방별정직 7 급상당 (의료기기수리기사)
에 입함.
4호봉을 급함.
강남병원 근무를 명함.

임 중 현

지방별정직 7 급상당 (비파기사)에
입함.
16호봉을 급함.
정산병원 근무를 명함.

유 영 무

지방별정직 7 급상당 (고압가스관리기사)
에 입함.
5호봉을 급함.
고수원지사무소 근무를 명함.

윤 광 석

지방별정직 7 급상당 (고압가스관리기사)
에 입함.
3호봉을 급함.
보광동수원지사무소 근무를 명함.

◎ 1982년 1월 14일자 명제 7호

신 유 용 민 수

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입함.
3호봉을 급함.
동작구 근무를 명함.

<p>신 규 한 덕 연</p> <p>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. 1호봉을 급함 거서구 근무를 명함.</p> <p>신 규 김 찬 수</p> <p>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. 2호봉을 급함.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.</p> <p>신 규 심 제 인</p> <p>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. 3호봉을 급함. 판악구 근무를 명함.</p>	<p>신 규 최 동 훈</p> <p>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. 6호봉을 급함. 관악구 근무를 명함.</p> <p>신 규 유 동 훈</p> <p>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. 4호봉을 급함. 종로구 근무를 명함.</p>
---	---

◎ 1982년 1월 15일자

상 제 8 호

성 명	발 명 사 한	원 부 서	직 신
장 병 선	종로구 보건소 방역과장	도봉구 보건소 방역과장	지방보건기과
박 자 익	용산구 " "	영등포구 " "	" "
최 인 규	성동구 " "	용산구 " "	" "
강 영 일	동대문구 " "	종로구 " "	" "
변 상 덕	도봉구 " "	동대문구 " "	" "
강 의 식	서대문구 " "	성동구 " "	" "
윤 효 영	마포구 " "	강서구 " "	" "
한 중 석	강서구 " "	마포구 " "	" "
박 영 식	영등포구 " "	강남구 " "	" "
강 순 욱	종로구 " 보건지도과장	강남구 " 보건지도과장	지방외무기과
유 승 화	용산구 " "	영등포구 " "	" "
김 형 숙	성동구 " "	성북구 " "	" "
임 일 연	성북구 " "	성동구 " "	" "

성 명	발 명 사 항	원 부 서	직 급										
나노진	서대문구보건소보건지도과장	용산구보건소보건지도과장	지방의무기과										
백은석	영등포구 " " "	서대문구 " " "	"										
이용욱	강남구 " " "	종로구 " " "	"										
<p>◎ 1982년 1월 14일자 명제 9호 명제 12호</p> <p>통계전산담당관 정 선 재 신 규 박 중 문</p> <p>지방별정직 8급상당 임함.</p> <p>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. 12호봉을 급함.</p> <p>내무국 근무를 명함.</p>													
<p>◎ 1982년 1월 15일자 명제 10호 명제 13호</p> <p>내 무 국 임 경 선 신 규 서 재 용</p> <p>서 기 관 임 경 선</p> <p>교통국 지하철도과장에 포함. 지방별정직 3급상당에 임함.</p> <p>1호봉을 급함.</p> <p>종합전실본부설계관리실장에 포함.</p>													
<p>명제 11호</p> <p>통계전산담당관 이 남 수 ◎ 1982년 1월 16일자 명제 15호</p> <p>지방행정사무관 아 동 상 담 소 박 명 희</p> <p>지방별정직 8급상당</p> <p>복직을 명함. 1982.1.11자 신규임용 발령을 동</p> <p>운영과 교육제장에 포함. 일자로 취소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울특별시</p>													
<p>◎ 공무원 사망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소 속</th> <th>직 명</th> <th>성 명</th> <th>사망일시</th> <th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강남구민방위과</td> <td>지방행정주사보</td> <td>조갑선</td> <td>82.1.9.05:00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top: 10px;">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</p>				소 속	직 명	성 명	사망일시	비 고	강남구민방위과	지방행정주사보	조갑선	82.1.9.05:00	
소 속	직 명	성 명	사망일시	비 고									
강남구민방위과	지방행정주사보	조갑선	82.1.9.05:00										